

**정계적 논쟁이나 이념적 토론은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 13 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반론권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

Front National C/ J. Saint-Cricq et La Nouvelle République du Centre-Ouest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1ère Chambre),  
1997 년 9 월 11 일(파리 지방법원)  
LIGIPRISSI Revue mensuelle du droit de la communication  
통권 135 호, 1997 년 3 월(제 2 호). 28-29 면

**사실관계**

'중서부 새 공화국' (La Nouvelle République du Centre-Ouest)이라는 신문에서는 1995 년 5 월 12 일자에 도미니크 제르보(Dominique Gerbeau) 명의로 '위험한 음모' (Néfastes Complicités)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전선'(Front National)은 1995 년 5 월 15 일 동 신문의 발행인을 상대로 1881. 7. 29.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 13 조에 의거하여 반론문의 게재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동 신문은 반론문 게재를 거부함에 따라 국민전선은 1995 년 8 월 3 일부로 동 신문의 발행인인 자크 생-크리크(Jacques Saint-Cricq)와 '중서부 새 공화국'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주장하는 반론문의 게재를 요구하는 일방 민사상 손해배상금 3 만 프랑의 지불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전선은 가집행을 청구하였고, 나아가서 새 민사소송법 제 700 조에 따라 1 만 프랑의 수당지급을 청구하였다.

자크 생-크리크와 '중서부 새 공화국'회사는 1995 년 11 월 23 일자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그 이유는 논쟁기사이나 비판기사에 대하여서는 반론권이 허용될 수 없으며, 반론권은 또한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서 신문이 의사 표명을 할 때마다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반론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민전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청구인들은 새 민사소송법 제 700 조에 의거하여 1 만 프랑의 지불을 요구하고, 부차적으로 청구된 손해배상액의 현저 한 감액을 요구하였다.

국민전선의 총채인 장-마리 르 펡(Jean-Marie Le Pen)에 의하여 개최된 시위에서 발생한 젊은 마로코인(Marocain), 브라임 부랑(Brahim Bouarram)의 피살사건에 대하여, 반론을 야기한 기사가 그 책임을 국민전선에 돌리고 있는 것은 반론권의 삽입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청구 인은 주장하고 있다.

**판시사항**

1881 년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 13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론권에 비추어 본다면,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문제의 기사가 보도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격의 존중권을 방어하고 당사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러한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다. 반론권은

일반적이고 절대적이며, 또한 반론권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이루게 된다. 왜냐하면 반론권은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반하여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인권협약'(Convent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제 10-2 조에 의하면 반론권은 명예나 제 3 자의 권리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매우 한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반론권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언론을 왜곡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언론은 스스로 표명하고자 하는 이념에 반하는 견해의 게재를 강요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견해를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전선이 주도한 시위에서 마로크 청년의 죽음과 관련하여 문제의 기사의 작성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국민전선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선의와 그들의 경찰과의 협력을 제시하면서 정치적 오명을 씻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마로크 청년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은 장-마리 르 펑의 정당이라 아니라 국민전선의 이념이다. 국민전선의 이념은 타인에 대한 증오, 특히 마그레브인(Maghrébin)에 대한 증오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바로 그러한 이념이 결국 젊은 청년의 죽음으로 귀결되었다."

이에 대해 국민전선은 다음과 같은 반론문의 게재를 요구하였다:

"귀하가 신문에서 기술한 것과는 반대로……국민전선은 타인에 대한 증오를 야기하는 이념을 결코 개진한 바 없다. 우리의 정강정책에는 그와 같은 비난을 초래할 만한 내용이 결코 포함되어 있지 아니다. 다시 한번, 나는 국민전선이 인종차별적인(raciste) 정당이 아님을 밝혀 둔다.

국민전선은 현재의 이민자에 대한 이민정책에 반대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증오나 추방의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반면에, 국민전선은 프랑스국민 상호간에 연대를 강화하고 국민상호간에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제안한 바 있다. 지난날의 레바논이나 오늘날의 발칸반도에서와 같이 복합문화적인 사회에서는 항시 유혈적인 사태가 출현하게 된다. 국민전선의 입장은 이 땅에서 출신성분이상이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충돌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국민전선은 어떠한 연설이나 문서를 통해서도, 이민자들이 이 나라의 쇠락이나 약화에 따른 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결단코 한 바 없다. 실업, 치안불안정, 이민문제, 재정적자, 관용주의 등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증폭시키는 것은 바로 프랑스 정객들이다.

국민전선은 인종차별적 이거나 외국인을 증오하거나 파시스트적인 정당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국민 전선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며 프랑스의 정당(le parti de la France)이다."

국민전선의 요구에 따라 경찰이 협조하였다는 기사를 살펴 보건대, 그 기사는 마로크 청년의 죽음과 관련하여 장-마리 르펑이나 그 정당 원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기자가 본 사실관계는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건대 이 문제된 기사에서 국민전선을 인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 보건대, 기사는 국민전선의 이념이나 정책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기자의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장-마리 르펑은 그의 반론에서 그의 정당에 대하여 행한 판단에 대하여 이를 다투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치적 논쟁이나 이념적 토론은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 13 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반론권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

국민전선의 입장을 살펴 보면 그것은 반론권의 행사를 통해서 국민전선의 이념을 전파하고, 국민전선의 정강정책을 홍보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곧 그 목적에 있어서 반론권을 왜곡시키고, 실제로 반론권을 남용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반론문의 게재 거부는 정당하다.

## 판결주문

국민전선의 청구를 기각한다.

새 민사소송법 제 700 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소송비용은 국민전선의 부담으로 한다.

## 판결해설

(Emmanuel Derieux 의 평석참조)

프랑스에 있어서의 반론권은 정기간행물의 경우와 시청각통신의 경우가 구별되고 있다. 이 사건은 정기간행물에 대한 반론권의 사례이다. 1981 년 7 월 29 일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상 반론권은 "정기간행물의 보도를 통해서 지명되거나 지칭된 모든 자가 반론을 야기 한 것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자신의 설명과 항의를 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 13 조에서는 반론문은 반론을 야기한 기사와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활자로 게재되어야 하며(제 2 항), 반론문에는 주소나 인사말 또는 의례적인 인사나 서명을 기재하지 못하며, 반론문의 길이는 반론을 야기한 기사의 길이로 제한한다(제 3 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론권은 일반적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반론보도청구인이 주장하는 반론을 야기한 기사와 동일한 지면, 동일한 위치, 동일한 활자로 게재하여야 하며, 반론문의 형식, 내용, 범위, 효용 등은 청구 인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와 이론이다(참조 판례: 파기원(Courdo cassation(Ch. crim.)) 1987 년 1 월 20 일 판결). 따라서 법률, 선량한 풍속, 제 3 자의 정당한 이익 혹은 언론인의 명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반론게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참조 판례: Cour d'appel de Lyon(4 ch., sect. A) 1985.10.25, Lignel c.Sté Agence Havas).

이 사건은 국민전선이 주최한 시위 끝에 마로크 청년이 세느강에 밀려 익사한 사건이 발생하자 국민전선의 이념을 비판하는 기사가 게재되어 국민전선의 당수인 장-마리 르팽이 국민전선은 극우적 이거나 인종차별적인 정당이 아니라는 요지의 반론문 게재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요구한 사안 중의 하나이다.

낭테르(Nanterre)지방법원은 1996 년 4 월 17 일 판결에서 장-마리 르 팡의 반론권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베르사이유(Versailles) 고등법원은 1996 년 7 월 3 일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베르사이유 고등법원도 위 사건의 판결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의 판시 사항을 개진한바 있다. 즉 신문기사에서 장-마리 르팽의 이념이나 정강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하여, 르팽이 반론권의 행사를 통하여 정치적 논쟁이나 이념과 관련된 토론을 야기하는 것은 반론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사실상 반론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파리지방법원(TGI do Paris) 형사 17 부의 1996 년 9 월 12 일 판결에서 비록 사안은 다르지만 장-마리 르팽의 극우적인 성향에 대한 기사에 대한 반론권 행사에 대해서도 위 판결과 마찬가지로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신문에서 지명되고 지칭된 모든 자에게 자유롭고 공개적인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설정된 반론권이, 만약 언론인의 정치인에 대한 분석과 평가할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 13 조의 목적을 왜곡시키는 것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문제는 장-마리 르팽의 이러한 반론권 행사가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 13 조를 왜곡한 것이냐 이다.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있어서 이념적인 토론이나 정치적인 논쟁을 반론권외 대상으로 삼으려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반론권의 남용은 동시에 반론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프랑스에 있어서의 반론권의 한계를 적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반론권의 객체와 관련하여 한국이나 독일의 법제에서는 사실관계에 한정하고, 언론의 비판이나 평론기사는 반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반면에 프랑스의 법제하에서는 언론의 비판이나 평론기사도 원칙적으로 반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언론의 모든 평론이나 비판기사가 반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사건 및 위에서 인용한 유사한 사건에서 명백히 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비판이나 평론기사도 반론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러한 반론권의 행사로 인하여 언론의 비판이나 평론 자체 즉 언론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반론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전선이라는 정당의 정강정책에 대하여 인종차별적이고 이민에 대하여 적대적인 극우정당이라는 평가는 이미 프랑스의 일반국민이나 정계에서 일반화된 인식이고, 또한 객관적인 사실에 가까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가를 문제 삼아 국민전선의 반론문을 게재할 경우에는 사실상 국민전선의 변호지면 만을 게재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중국에는 전 프랑스 언론이 국민전선의 반론문을 거의 매일 게재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바로 여기에 이 사건에서 법원이 언론의 반론문 게재거부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을 준거로 하여 프랑스에서의 반론권 행사에 비판이나 평론기사에 대한 반론권 행사에 폭넓은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서도 안될 것이다.

결국 실제로 어떠한 비판이나 평론기사가 반론의 대상이 되고 또한 반론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성낙인, 영남대 법학과 교수 역).